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단수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인 날인을 대신하여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 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취업하려는 직종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심사 편의 증진(현행 제1조제4항 단서 삭제, 제1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3항)

- 1) 일반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출입국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로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도 종전에는 출입국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원 신분증명서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2) 단수여권 소지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여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국심사인 날인하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분야 취업 관리 강화(제23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가사 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음.

다. 단기취업 대상자 추가 및 연구자격 취득요건 완화(별표 1 제5호 및 별표 1의2 제16호)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단기취업(C-4) 대상자로 추가하고, 자연과학 연구에 한정되었던 연구(E-3) 자격 활동범위를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까지 확대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45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위원의 위촉 시 청소년 관련 단체·기구

에서의 활동 경험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청소년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6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 및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최고 10억원으로 정하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관련 자료제출 및 평가(제16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함.

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대상자 범위 및 가입금액(제18조의2 신설)

-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가입금액 또는 적립금액을 이용자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천만원, 최고 10억원으로 정함.

라. 검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 등(제36조의 6제3항 및 제4항)

- 1) 검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 2) 검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을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4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범위 및 사후관리의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신설)

-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과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이 됨.
- 2)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범위 및 사후관리의 절차·방법(제7조 신설)

- 1)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함.
- 2) 자살예방센터의 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은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40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4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개인이 아닌 자가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53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그 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에 대한 조회를 직접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826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 제도로 운영하던 것

을 등록 제도로 변경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제도 관련 규정을 등록 제도 및 등록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전담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전담조직 등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에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46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998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고 주민과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소규모 공원시설을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2.] [대통령령 제 29833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방법, 장기요양요

원의 보호 방법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제13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함.

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14조의3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상해 등의 행위를 당한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이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함.
-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법률·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요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0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시키며,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212호, 2012. 1. 26. 공포, 2019. 8. 1. 시행 및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공포, 2019. 8. 1. 시행)됨에 따라, 강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강사 임용을 위

한 서면계약에는 임용기간, 임금,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의 근무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 등의 강사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의 경우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경우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